

사학기관 감사증명서

| | | | | |
|-------------------------|---------|---|---------------------|--------------|
| 1. 학교법인 | ① 학교법인명 | 승의학원 | ② 이사장 성명 | 윤 순 희 |
| | ③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2길 10 | | |
| | ④ 전화번호 | 02-778-1691 | ⑤ FAX | 02) 752-8924 |
| | ⑥ 회계연도 | 2014회계연도 :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 | |
| 2. 설치·경영 대학교 | ⑦ 대학교명 | 승의여자대학교 | ⑧ 총장 성명 | 이 승 원 |
| | ⑨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2길 10 | | |
| | ⑩ 전화번호 | 02-3708-9000 | ⑪ FAX | 02) 753-1311 |
| | ⑫ 입학정원 | 1,690명 | ⑬ 기타 동 법인 설치·경영 학교명 | 승의초·중·고등학교 |

3.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 | |
|--|---|
| 구 분 |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요약 |
| ⑭ 감사의견 ⑮ 한정사항 ⑯ 특기사항 ⑰ 기타 ⑮ ⑯ 이외의 중점 확인사항 관련 위반사항 |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승의학원의 일반업무회계와 동 법인이 설치한 승의여자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5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와 운영성과와 동일로 종료되는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에 의거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14.11.26),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이 상 문



학교법인 승의학원 이사장 윤순희 귀하

첨부서류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별지 제3호 내지 제3의4호 서식) 및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교육부 고시 제2014-55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외부감사결과 집계표 등(별지 제4호 내지 제4의5호 서식)

新韓會計法人

Member firm of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議事堂大路 8
(여의도동, 삼환까뮤빌딩 8層)

代表電話: 782-9940
F A X: 782-9941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승의학원
이사회 귀중

2015 년 4 월 16 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학교법인 승의학원의 일반업무회계 및 법인이 설립한 승의여자대학교 교비회계의 2015 년 2 월 28 일과 2014 년 2 월 28 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 운영계산서와 동일로 종료되는 2015 년 2 월 28 일과 2014 년 2 월 28 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그리고 2015 년 2 월 28 일과 2014 년 2 월 28 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합산자금계산서, 합산운영계산서와 동일로 종료되는 2015 년 2 월 28 일과 2014 년 2 월 28 일 현재의 합산대차대조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학교법인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학교법인 승의학원이 적용한 회계원칙과 중요한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정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승의학원의 일반업무회계와 동 법인이 설치한 승의여자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5 년 2 월 28 일

과 2014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자금수지와 운영성과와 동일로 종료되는 2015년 2월 28일과 2014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신 한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李相文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